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2017 제출연월일: 2024. 7. 19.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의 자격취 득 과정에 한정하던 것을 보수교육 과정에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아동·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제35조제1항 중 "자격취득"을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제56조제1항제3호 중 "지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고, 같은항 제11호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설립된"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으로, "지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의 청소년게 임제공업 제56조제1항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 전단 중 "채용하는 사업장"을 "채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0호"를 "제10호 및 제18호"로, "인가·신고를 관할하는"을 "인가·허가·등록·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
-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교육부장관: 다음 각 목의 기관
 - 가. 제56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나. 제56조제1항제2호의4의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법」 제2 조의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 3. 여성가족부장관: 다음 각 목의 기관
 - 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
 - 나. 제56조제1항제6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다. 제56조제1항제15호의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및 단체
- 라. 제56조제1항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제5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의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다)
 - 10. 제56조제1항제15호의 청소년단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법인 및 단체
 - 12. 제56조제1항제17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제57조제4항에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제56조제1항제2호의4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 5의2.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 제67조제2항제2호 중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제58조제1항에 따

른 해임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자
- 2.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이 제한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6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폐쇄요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6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의 신고) ① (생 략)	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	
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	
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	
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	
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대	법」 제2조제6호의 대중문화
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예술기획업을 하는 사업장(이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	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	<u>한다)</u>
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소"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4	①
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 켜야 한다.

②·③ (생 략)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ス 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 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 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 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 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 (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 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 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
②·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1. ~ 2의3. (생 략) <u><신 설></u>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u>지정하는</u>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 10. (생 략)

아니하다.
 1.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
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
<u>기관</u>
3
<u>정하여 고시하는</u>
4. ~ 10. (현행과 같음)

-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u>지정하는</u>
 체육시설
- 12. (생략)
-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신 설>

<u>가</u>.·<u>나</u>. (생 략)

14. (생략)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 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 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 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1.
른
는 12. (현행과 같음) 13
는 12. (현행과 같음) 13
는 12. (현행과 같음) 13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 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나.・다. (현행 가목 및 나목 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
12. (현행과 같음) 13
13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 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보.・다. (현행 가목 및 나목 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는 다른 법 가. 「민법」 또는 다른 법
법률」 제2조제6호의2가 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나.・다. (현행 가목 및 나목 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
법률」 제2조제6호의2가 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나.・다. (현행 가목 및 나목 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
법률」 제2조제6호의2가 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나.・다. (현행 가목 및 나목 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
법률」 제2조제6호의2가 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나.・다. (현행 가목 및 나목 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
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나.・다. (현행 가목 및 나목 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
나.・다. (현행 가목 및 나목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
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
14. (현행과 같음)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
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민법」 또는 다른 법
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
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
<u>가. 「민법」 또는 다른 법</u>
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장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16. (생략)

-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 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 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 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 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 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

-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
 제4조에 따라 여성

 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
- 16. (현행과 같음)
-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이 우려되는 시설등

-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 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 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 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 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 다.
- 19. (생략)
- 20.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u><삭 제></u>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 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 21. ~ 25. (생략)
- ②·③ (생 략)
- 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 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 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 • 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18
<u>채용하는 사</u>
업장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
19. (현행과 같음)

- 21. ~ 25.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0호 및 제1 8호-----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허가·등록·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 ⑧ (생 략)

-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1. 교육부장관: 제56조제1항제2

 호의 기관 중 「고등교육

 법」 제2조의 학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
확인) ①
<u>.</u>
1. 교육부장관: 다음 각 목의
<u>기관</u>
가. 제56조제1항제2호의 기

- 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제1 항제20호의 공공시설
- 3.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 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재 활센터, 같은 항 제6호의 이 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 은 항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4. 삭 제

- 5. (생략)
- ② (생략)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관 중 「고등교육법」 제 2조의 학교

나.제56조제1항제2호의4의외국교육기관중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상응하는외국교육기관

<삭 제>

- 3. 여성가족부장관: 다음 각 목 의 기관
 - <u>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u> 소년 보호·재활센터
 - 나. 제56조제1항제6호의 이 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다. 제56조제1항제15호의 청 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여 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및 단체
 - 라. 제56조제1항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 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

수 · 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

 활동시설
- 2. ~ 8. (생략)
- 9. 제56조제1항제13호 각 목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사업장
- 10. 제56조제1항제15호의 청소

 년활동기획업소

- 1.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

 활동시설(「평생교육법」 제2

 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다)
 - 2. ~ 8. (현행과 같음)

 - 10.제56조제1항제15호의 청소년단체중지방자치단체의장의허가를받거나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등록한법인및단체

- 11. (생략)
- 12. 제56조제1항제17호의 아동 ·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 13. 삭 제
- 14. ~ 17. (생략)
- ④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 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 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 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 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 검 ·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1. ~ 4. (생 략) <신 설>

5. (생략)

- 11. (현행과 같음)
- 12. 제56조제1항제17호의 노래 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 이 허용되는 시설등으로서 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 정한다)

14. ~ 17. (현행과 같음)
4

- 1. ~ 4. (현행과 같음)
- 4의2. 제56조제1항제2호의4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 교육법 | 제2조의 학교에 상 응하는 외국교육기관
- 5. (현행과 같음)

<신 설>

- 6. 7. (생략)
- ⑤ · ⑥ (생략)

제67조(과태료) ① 삭 제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 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의 장
- ③ (생 략)
- ④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 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5의2.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 6. 7. (현행과 같음)
- ⑤·⑥ (현행과 같음)

제67조(과태료)

- ② ------
- 1. (현행과 같음)
- 2. <u>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임요</u> 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 른 폐쇄요구----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u>자</u>
	2.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
	<u>짓</u> 자료를 제출한 아동·청
	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